

목 차

1. 직무 고시 중 전문 진단업체 자격 기준? -----	2
2. 점검 횟수 질의(연휴 기간이 길 경우?) -----	3
3. 계전기 동작 시험(시한레바) -----	4
※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서 서류 -----	5

안녕하세요...

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중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전문기관 및 진단업체 점검을 의뢰~~에서

<질문>

1. 외부전문기관 및 진단업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???
2. 가령 제가 전기안전대행사(인천 지역)에 소속되어 있는데(장비는 갖추었음) 무작정 지금 점검이 가능한지" ???
3. 또한 지방 또는 1000kW이상 점검이 가능한지요???

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

<답변>

-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- 전기사업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“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”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맞게 일상점검·정기점검·정밀점검의 절차,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전기설비를 점검 하여야 하며,
 - 또한, 현행법상 진단업체의 등록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, 고시 제3조의 점검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서 정하는 정밀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와 계측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.
 - 참고로,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**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진단업체의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은 불가하며**, 대행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제41조 및 제44조의2(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)에 따라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관리하는 수용가에 한하여 안전관리의 목적범위 내에서 정밀(연차)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, **대행사업자가 대행범위(1,000kW 미만)를 초과하여 점검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**
 - 다만, **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정밀진단업을 등록하고**,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**선임되지 아니한 기술인력은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**
-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제도1팀(02-2182-0742~3)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성심껏 알려드리겠습니다.

<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중 점검 횟수 질의> 질의 일자 : 2017-10-19

안녕하세요....

올해 2017년 10월 연휴가 많았습니다 (10월1일 ~ 10월10일)

10월중 약 1/3이 연휴였습니다 (10월 근무일수 약 16일 정도)

이런 경우 4회차 이상 점검 대상이나 공장은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?

(직무고시중 4회 점검 : 점검 간격 5일 이상)

<답변>

○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
○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“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”를 반영하고,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·정기점검·정밀점검의 절차,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전기설비를 점검하여야 하며,

- 점검횟수가 월4회인 경우에 점검간격은 매월 1일, 8일, 15일, 22일에 점검하는 것이 이상적이나, 직무 고시 제4조에 따른 점검주기는 최소 점검간격을 규정한 것으로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점검간격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,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○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제도1팀(02-2182-0742~43)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성심껏 알려드리겠습니다.

<계전기 동작시험> 질의 일자 : 2018-01-17

안녕하세요...

계전기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

시험특성시험에서 시험레바를 얼마로 놓고 시험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???

현재 시험레바 setting치 "1" 전류 탭이 3 으로 놓인경우 계전기 시험하였을때 시험레바를 얼마로 놓고 시험하는지 궁금합니다(OCR, OVR)

만약 시험레바를 1에다 놓고 동작시험 할때 트립 시간이 빨라서 오차가 있을것 같구 제작사 메뉴얼은 10에 놓고 시험하는것 같은데???

<답변> 기술팀 02-2182-0771~3 답변일자 : 2018-01-30

안녕하세요.

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.

1) 일반적인 경우: OCR, OVR시험 특성시험시 ---- 시험레버 위치

<규정상 특별히 정한 것은 없음>

- 계전기 일반 특성 확인 시

해당계전기 특성 곡선(T-C곡선: 카타록이나 사용자 매뉴얼에 있음.)을 보고 보통 전류 탭의 300% 입력(탭이 3[A]이면 9[A])을 인가하면서 동작시간을 측정하여 특성곡선상 레버 1에서의 시간을 기준으로 오차를 계산하여 제작자가 보증하는 오차 범위이내면 양호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보통 ($\pm$)10% 이내이면 양호로 본다.

- 다른 전류치 500%: 15[A], 700%: 21[A]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.

- 이 때 각 입력에서의 시험 오차가 들쭉 날쭉 할 경우에는 대개 300%를 중요시하여 는 것이 일반적이다.

2) 보다 전문적인 경우: OCR의 경우 실제 계통에서 다른 COCR과 동작협조를 위하여 특별히 고장전류가 탭치의 몇%에서 협조가 긴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(고장계산 및 계전기 Setting하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음) 이 때는 그 입력치에서 필요한 동작시간이 나오도록 레버를 1.0이 아닌 1.1 또는 0.9로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.

3) 레버 10에 놓고 하는 것은 계전기가 대략 본래의 특성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.

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서 서류

- 법인등기부등본
- 인허가증(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) : 관할 세무서 연락 후 인허가 필요 업종 확인
기존 사업과 다른 신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 목적 란에 해당 내용 추가
- 사업자등록증 원본
- 위임장(대표자 외 직원이 방문할 경우)
- 대리인신분증
- 법인 인감도장
-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(세무서에 비치됨) : 국세청에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다운로드
※ 온라인 산청의 경우 홈텍스를 통해 가능
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의 경우 모든 세무서에 직접 수령